



위자료 및 휴업손해 산정방법

1.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 중에서 금액이 많은쪽 하나로 결정한다.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장해 위자료가 많기 때문에 장해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된다.

가. 부상위자료

1급 : 100만원	5급 : 28만원	9급 : 14만원
2급 : 88만원	6급 : 24만원	10급 : 12만원
3급 : 76만원	7급 : 20만원	11급 : 10만원
4급 : 64만원	8급 : 16만원	12급 : 8만원

부상 위자료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명으로 급수를 결정한다. 치료기간 또는 진단기간과는 관계 없이 진단명 만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요추나 경추부염좌의 경우 9급에 해당되는데, 진단서에 진단기간이 3주가 나왔으나 치료기간은 입원 2일, 통원 5일만 했다고 하여도, 부상 위자료 급수는 9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 두가지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 요추부염좌로 초진 3주의 진단이 나왔으나 3개월을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도 위자료 급수는 9급에 해당된다.

- 요추나 경추부염좌와 뇌진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의 급수는 요추부염좌의 9급과 뇌진탕의 11급이 합하여 한 급수 높은 8급의 위자료에

해당된다.

나. 장해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장해위자료는 치료가 종결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사용하는데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퍼센트)로 표시되며,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급수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1)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인정액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액
100	1,000	49~45	200
99~95	800	44~35	120
94~90	600	34~27	100
89~85	500	26~20	80
84~79	400	19~14	60
78~67	300	13~9	50
66~50	250	8~5	40

(2)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인정액의 20%	피해자 본인인정액의 10%

2. 휴업손해 산출

■ 공식 ■

$$\text{실제수입감소액} \times 80\%$$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지급한다.

- ①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 ② 실제수입 감소액 : 피해자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사고 발생이전에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수입금액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가. 월급생활자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로 하되 계절 적요인 등에 따라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의 평균 금액으로 하되 실제 수입 감소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나. 주부 및 일용근로자

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주부로서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표〉 정부노임단가 일용근로자 임금표(보험금지급 기준)

구분	98년상반기	98년하반기	99년상반기	99년하반기	2000년 상반기
일당	37,736원	34,098원	33,755원	33,323원	34,360원
월	830,192원	750,156원	742,610원	733,106원	755,920원

- 월 임금은 일당에 22일 (월중 근로일수)을 곱하여 계산한다.
- 일일 휴업손해액은 월 임금의 1/30로 계산한다.

- 98년 하반기부터는 IMF 구제금융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아졌다.
- 학생, 무직자, 노인의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기간 중 휴업손해 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무직자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 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해 생활하는 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 ① 소득세 등 세금을 내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액을 인정
- ②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곤란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외국인 노동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현실 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하면 현실소득 금액을 인정
- ② 현실적으로 소득 금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 ③ 불법 취업자인 경우 제 외국(본국)의 평균 근로임금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바. 60세 이상 노인

사고발생 직전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휴업손해를 인정한다.

- 통상적인 노동가능 연령은 만 60세까지로 보지만 56세 이상인 자의 경우 사망, 장해 발생시에는 다음 표에 의거하여 취업 가능할 월수를 인정한다.

만 56세 이상 ~ 59세 미만	48개월 인정
만 59세 이상 ~ 67세 미만	36개월 인정
만 67세 이상 ~ 76세 미만	24개월 인정
만 76세 이상	12개월 인정

